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826 호

제출년월일 : ２０２３년 2월 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3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4～5조)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7조)
마. 위원의 임기, 해촉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 8～14조)
바. 답례품의 종류 및 제공(안 제15～16조)
사.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문 별첨(참조)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고향사랑기금' 설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 11. ～ 2023. 1. 3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및 답례품 선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기금 설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 및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소관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소관팀장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운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중 구에 소재한 기업의 생산품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등

제16조(답례품의 제공)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소관 부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계좌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예산 반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세출비용을 추계한 결과 추계액은 향후 5년 간 총 109,450천원 소요 예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세 출	위원회수당 등	2,170	2,110	2,170	2,110	2,170	10,730
	답례품제공비용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시스템 유지관리	8,344	8,344	8,344	8,344	8,344	41,720
	홍보비용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소 계	21,914	21,854	21,914	21,854	21,914	109,450

※ 기부총액의 15% 내에서 제도 운영, 홍보비 사용 가능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등 : 2,170,000원**

-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 70,000원 × 5명 × 2회 = 700,000원
- 답례품선정위원회 : 70,000원 × 4명 × 2회 = 560,000원
- 위촉장 제작 : 6,600원 × 9명 = 60,000원(2년 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000,000원 × 85% = 850,000원

○ **답례품 제공비용 : 9,900,000원**

- 구입비 : 100,000원 × 30% × 300명 = 9,000,000원
- 배송비 : 3,000원 × 300명 = 900,000원

○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8,344,000원

(전국 지자체 균등 분담)

○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비용 : 1,5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구정발전 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획예산과, 구정발전 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기획예산과, 구정발전 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민간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 재원조달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구 일반회계	21,914	20,354	20,414	20,354	20,414	103,450
기 금	0	1,500	1,500	1,500	1,500	6,000
합 계	21,914	21,854	21,914	21,854	21,914	109,45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구 일반회계, 고향사랑기금

6.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기획예산과	과 장	이 인 미	2620-317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2826-1호

제출년월일: 2023년 2월 23일
제 출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의 조항 중 하위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는 조의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나.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임기)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답례품의 종류) ① (생 략)	제15조(답례품의 종류) (현행 제1항과 같음)